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(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1. 검진에 필요한 검진기준 고시 근거 마련(안 제4조제2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검진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검진의 신뢰성 및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에 ‘제1항에 따른 검진에 필요한 검진기준(검진항목, 고려사항 등을 말한다)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’함을 신설함(안 제4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고엽제후유(의)증 등 환자 검진에 대한 신뢰성 및 국민 알권리를 제고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